


Fi 저축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 분	내 용											
상품명	• Fi 저축예금											
가입대상	• 개인											
가입금액 및 기간	• 제한없음											
가입채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개설 시 개설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• 모바일뱅킹(다올디지털뱅크 Fi, SB톡톡+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개월 내 요구불예금 개설이력이 없는 등 비대면계좌개설을 위한 조건충족 필수 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•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											
이자율 (25.01.13 현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• 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, 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부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.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(연,세 전)</th> <th>대면(영업점)</th> <th>비대면(SB톡톡+)</th> <th>비대면(다올디지털뱅크 Fi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이율</td> <td>2.80%</td> <td>2.80%</td> <td>2.8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(연,세 전)	대면(영업점)	비대면(SB톡톡+)	비대면(다올디지털뱅크 Fi)	기본이율	2.80%	2.80%	2.80%
(연,세 전)	대면(영업점)	비대면(SB톡톡+)	비대면(다올디지털뱅크 Fi)									
기본이율	2.80%	2.80%	2.80%									
원천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 							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											

